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 4명, 2심서 벌금형 추가

집행유예 받았던 4명, 최대 2천만원 벌금 추가 1심 땀 징역 1년~1년6월 · 집유 2~3년만 선고돼 나머지 4명엔 1심과 동일 벌금 1천~2천만원

지난 2018년 잘못 입고된 주식을 팔아치운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삼성증권 전·현직 직원들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일부에 벌금형을 추가하는 등 가중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소1부(부장판사 변성환)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삼성증권 전 직원 구모씨와 최모씨 등 8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구씨와 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겐 2000만원의 벌금형도 부과됐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함께 기소된 이모씨와 삼성증권 전 팀장 지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지난해 4월 1심은 구씨와 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집행유예 3년, 이씨와 지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었는데, 이날 이들에게 1000만~2000만원의 벌금형이 새로 부과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제기한 1심 법원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인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다만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누락해 그 부분만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재판을 받은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1000만~2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다만 2심 재판부는 검찰 측 항소도 기각했다. 위계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컴퓨터 등 사용 사기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식 매도 행위가 피해 회사 주가를 급락하게 했고, 사정을 몰랐던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위험을 낳았다”면서 “피해 회사는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95억원 가량을 지출해 손해를 봤다”고 판단

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나머지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 대부분과 달리 오입력된 주식을 가지고 주식 매도에 나섰다”면서 “이는 신의성실 원칙상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8명은 지난 2018년 4월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 실수로 잘못 전달된 주식을 매도. 회사와 투자자에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했기 때문에 삼성증권은 존재하지 않는 주식의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대차비를 제공하고 주식을 빌리는 등 약 90억원의 손해를 봤으며, 갑작스러운 주가 폭락으로 일반 투자자도 큰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는 지난 2018년 4월6일 담당자의 전산 실수로 발생했다. 우리사주 1주당 1000원씩을 배당해야 할 것을 주당 1000주씩을 배당하는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약 28억주가 배당됐다.

사고 전날 증가(3만9800원)를 감안하면 시장가치가 112조원에 이르는 유령주식이 배당된 셈이다. 사태는 일부 직원들이 배당받은 주식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역대급’ 금융사고로 비화했다.

사고 당일 오전 9시35분부터 10시6분 사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배당 사고에 대해 특별점검한다고 밝힌 지난 2018년 4월9일 오후 서울 시내의 삼성증권 지점 앞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18.04.09.

이 직원 21명이 매도 주문을 했고, 여기서 16명의 501만주(약 1820억원) 주문이 체결됐다. 그나마 이 중 5명의 주문은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이 여파로 삼성증권의 주가는 전일 증가 대비 최고 11.68%까지 떨어졌다. 개별 종목 주가가 일정 기준 이상 급변할 경우 거래를 제한하는 변동성 완화장치(VI)가 7차례나 발동됐다.

투자자들의 혼란은 극심해졌고 실마리

를 제공한 삼성증권 측은 사태 수습에 애를 먹었다.

금융감독원은 잘못 입고된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 주문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 2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계약 체결 직후 상사에게 보고하는 등의 도성이 적다고 보아 13명은 불기소 처분했고, 나머지 8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선욱 기자

광주시, 택시 종사자·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강력 단속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손해배상 청구



광주 북구청 공무원들이 3일 북구 용봉동 북구청 광장에서 마스크 쓰기 범시민 캠페인을 하고 있다. 광주는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진자가 일주일 동안 발생하지 않아 이날부터 방역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단계로 전환했다.

광주시는 긴 장마와 무더운 날씨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이 느슨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운수종사자와 이용객을 강

력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방역당국은 버스와 도시철도는 마스크 착용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반면 택시의 경우 주로 심야시간에 상권이 밀집한

지역 위주로 마스크 미착용자의 승차 거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운수종사자와 이용객에 대해 사회적 경중을 올리는 차원에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 3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전환됐지만,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와 행정조치는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버스, 택시, 도시철도 운수종사자와 이용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위반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입원·치료비와 방역비 등 각종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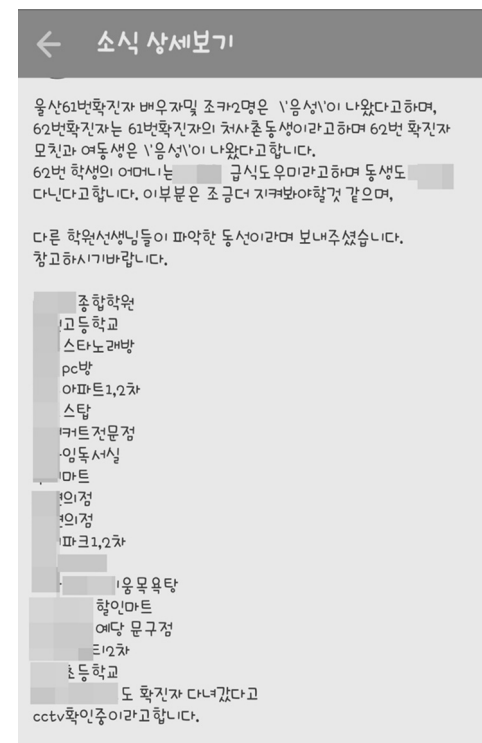
허익배 광주시 교통건설국장은 “심야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택시를 타려는 승객과 운수 종사자 간 다툼이 늘고 있다”며 “앞으로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한 시민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날 현재 광주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18명으로 지역감염자가 지속되고 있다.

조인호 기자

“고깃집서 옮겼대요”... ‘미확인’ 소문 퍼져 혼란

사실과 다른 내용 상당수...가게 상호명 노출 ‘2차 피해 우려’



울산에서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62번째 확진자와 관련해 지역 밀카페 등에서 확인되지 않은 글들이 올라와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울산시가 보다 빠르게 동선 발표를 해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

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시민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다”며 “행정에서 말 빠르게 동선을 공개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확인되지 않은 게시글을 보고 확진자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잇따라 마녀사냥 등의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글들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라며 “추가 확진자와 관련한 내용은 내일쯤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학생은 지난 9일 오후 8시30분부터 10시까지 61번 확진자와 복구의 한 노래연습장을 방문했다.

이 학생은 12일 오후 7시 북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 13일 오전 4시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학생은 원격수업 기간이라 학교 내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학원 등에서는 접촉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시 보건당국은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천곡중을 비롯해 인근 달천중, 상안중, 동천고, 달천고 등 5개 학교는 등교중지를 시켰다.

김민정 기자

N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